

##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

보험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-2조제4항 중 “감독규정 제5-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”를 “감독규정 제5-6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”로 한다.

제7-2조제5항제1호 중 “감독규정 제5-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”를 “감독규정 제5-6조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”로 한다.

제7-9조제1항을 제7-9조로 하고, 같은 조 “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”를 “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”로 한다.

제7-11조의2의 “제7-9조제1항제9호”를 “제7-9조제9호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정 제7-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7-9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제7-4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.

별표 13-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1. 생명보험

평가부문	계량 평가항목	비계량 평가항목
경영관리 리스크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</li> <li>▪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</li> <li>▪ 내부통제의 적정성</li> <li>▪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</li> <li>▪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</li> </ul>
보험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보험가격리스크 비율</li> <li>▪ 손해율(위험보험료 대 사망보험금 비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상품개발·판매의 적정성</li> <li>▪ 계약 인수·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</li> </ul>
금리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리리스크비율</li> <li>▪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자산-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준비금관리의 적정성</li> </ul>
투자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용시장리스크 비율</li> <li>▪ 변액보증리스크 비율</li> <li>▪ 부실자산비율</li> <li>▪ 대손충당금적립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업무의 적정성</li> <li>▪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</li> <li>▪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</li> </ul>
유동성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유동성리스크 비율</li> <li>▪ 유동성비율</li> <li>▪ 수지차비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</li> </ul>
자본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급여력비율</li> <li>▪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</li> <li>▪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</li> <li>▪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</li> </ul>
수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리스크 대 수익비율</li> <li>▪ 운용자산이익률</li> <li>▪ 영업이익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</li> <li>▪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정책의 적정성</li> </ul>

주)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,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

## 2. 손해보험

평가부문	계량 평가항목	비계량 평가항목
경영관리 리스크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이사회와 경영진의 적정성</li> <li>▪ 리스크관리체제의 적정성</li> <li>▪ 내부통제의 적정성</li> <li>▪ 보험사기 방지실태의 적정성</li> <li>▪ 소비자보호 업무의 적정성</li> </ul>
보험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보험가격리스크 비율</li> <li>▪ 준비금리스크 비율</li> <li>▪ 손해율(원수사:위험손해율, 전업재보사:합산비율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보험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상품개발·판매의 적정성</li> <li>▪ 계약 인수·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보험금 지급심사의 적정성</li> </ul>
금리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리리스크비율</li> <li>▪ 부담이자 대 투자영업이익 비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금리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자산-부채 종합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준비금관리의 적정성</li> </ul>
투자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신용시장리스크 비율</li> <li>▪ 부실자산비율</li> <li>▪ 대손충당금적립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투자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자산운용 관리체계 및 업무의 적정성</li> <li>▪ 자산건전성 분류의 적정성</li> <li>▪ 대주주와의 거래 적정성</li> </ul>
유동성리스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유동성리스크 비율</li> <li>▪ 유동성비율</li> <li>▪ 수지차비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유동성리스크 측정 및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유동성 변동요인의 적정성</li> </ul>
자본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급여력비율</li> <li>▪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</li> <li>▪ 자기자본지급여력비율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지급여력비율 관리의 적정성</li> <li>▪ 내부 자본관리 정책의 타당성</li> <li>▪ 자본구성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</li> </ul>
수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리스크 대 수익비율</li> <li>▪ 운용자산이익률</li> <li>▪ 영업이익률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▪ 손익구조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</li> <li>▪ 장기적 기업가치 관점의 손익관리 정책의 적정성</li> </ul>

주) 각 평가시점에서 비계량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직전의 비계량평가결과를 적용하며, 이전에 비계량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량평가결과만을 적용하여 평가

## 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<별표13-2>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부터 적용한다.



산출한다.

2. (생략)

⑥ ~ ⑦ (생략)

제7-9조(차입) ① 영 제5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한하여 차입할 수 있다.

1. ~ 9. (생략)

제7-11조의2(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) ① 보험회사가 제7-9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종자본증권을 중도상환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7-9조제1항제9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종자본증권의 세부요건, 조기상환 요건, 신고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.

③ <신설>

-----.

2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7-9조(차입) -----  
-----  
--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경우 또는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 ----  
-----.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제7-11조의2(신종자본증권의 발행 및 상환 등) ① -----  
-제7-9조제9호-----  
-----  
-----.

② 제7-9조제9호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3호 및 이 규정 제7-5조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신종자본증권의 방법으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7-9조의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

제7-44조(경영공시) ① 보험회사는 법 제1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일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분기별 임시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임시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.

1. ~ 6. (생략)

7. 경영방침 등 보험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 
감독원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

② ~ ⑦ (생략)

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
제7-44조(경영공시) ①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② ~ ⑦ (현행과 같음)